

「FIT 및 SIT 대상 제주여행상품 개발 및 홍보마케팅」 제주관광 상품 홍보를 위한 해외 현지 개별세일즈 변경공고

도내 관광업계의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제주관광 상품 홍보를 위한 해외 현지 개별세일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고의 내용(신청기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오니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2024년 10월 24일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제주관광 상품 홍보를 위한 해외 현지 개별세일즈 지원 변경 사항
(시행일: '24.10.24.)

- 신청기간 변경

· (현행) 2024. 4. 1. ~ 10. 31.

→ (변경) 2024. 4. 1. ~ 12. 8.

※변경사유

- 도내 관광사업체의 세일즈 지원 수요 증가로 지원기간을 연장하여
외국인 관광객 유치 증대 기여

□ 사업개요

○ 사업 명: FIT 및 SIT 대상 제주여행상품 개발 및 홍보마케팅

○ 주요내용: 제주관광 상품 홍보를 위한 해외 현지 개별세일즈 지원

□ 지원사항

○ 기 간: 2024. 4. 1. ~ 12. 8. *기간 연장,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공고일 이전 내역 소급적용 불가 및 해당 기간 내 진행된 세일즈 한정

(ex: 세일즈 복귀일 12/8 = 지원대상 / 세일즈 복귀일 12/9 = 지원불가)

○ 대 상

- 제주도내 본점을 둔 관광사업체

- 제주도내 지점(영업점)을 둔 해외 인바운드 전문업체

※ 조건사항

- 관광진흥조례 의거 관광사업체에 한함 (관광사업자등록증 보유 필수)

- 여행업의 경우 종합여행업에 한함

- 관광숙박업의 경우 사업장 주소지를 기준으로 함

○ 주요내용: 제주관광 상품 홍보 및 개발을 위한 해외 현지 개별세일즈 지원

○ 지원항목: 제주출발 왕복 항공료, 숙박비, 차량임차비

- 지원한도: **희당 최대 1,200천원** / 공급가액의 80% *업체당 최대 2,000천원 한도

- 지원조건

· 방문하는 현지 업체 수는 **세일즈 기간 이상** 되어야 함 *인아웃일자 제외

※ 관련예시

- 10. 15. 해외 도착 - 10. 20. 국내 리턴 / 체류일 4일, 4개소 방문 → 지원가능
- 10. 15. 해외 도착 - 10. 17. 국내 리턴 / 체류일 1일, 2개소 방문 → 지원가능
- 10. 15. 해외 도착 - 10. 19. 국내 리턴 / 체류일 3일, 2개소 방문 → 지원불가

· 2개 업체 이상 컨소시엄 구성 불가 (컨소시엄 미지원)

· 차량임차비 신청 시 임차비 외 타 비용 (가이드, 입장료 등) 포함 불가 (포함 시 지원 제외)

- 세부내역

구분	세부내용	지원금액	비고
항공료	제주출발 왕복 항공료	공급가액의 80% (자부담 20%, 부가세 미지원)	- 일반석에 한함 - 발권수수료 제외 - 부가서비스 제외 (좌석지정, 기내식 등)
숙박비*	현지 체류 숙박비	공급가액의 80% (자부담 20%, 부가세 미지원)	- 예약확인서 및 숙박 확인서 제출 - 공무원 여비규정 준용
차량 임차비	해외 현지 차량 임차비	공급가액의 80% (자부담 20%, 부가세 미지원)	- 임차계약서 상 차량정보 등록 필수 (차량번호 등) - 증빙사진에 본인 및 차량이 같이 나와야함

*숙박비(1박/1인) 지원 상한액

등급	국가명	숙박비 상한액
가	도쿄, 뉴욕, 런던, 홍콩, 싱가포르 등	\$176 (1박/1인)
나	일본, 타이완, 미국, 캐나다 등	\$137 (1박/1인)
다	중국, 인도네시아, 타이, 말레이시아 등	\$106 (1박/1인)
라	몽골, 베트남, 필리핀, 라오스 등	\$81 (1박/1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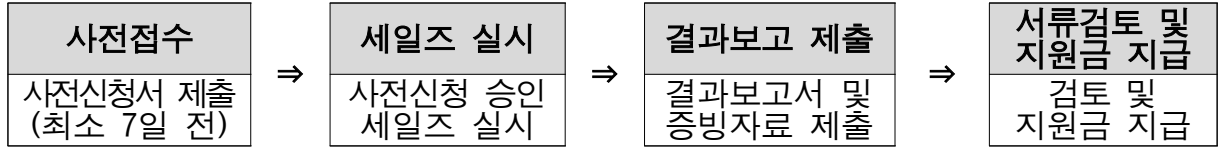
*숙박비 결제 당일 매매기준율에 따름 (천원미만 절사)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 공무원 여비규정 준용

- 인센티브: 송객계약 체결 시 전체지원 금액의 10% 추가지원

제출서류	지원조건
송객계약서	-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 진행되는 패키지 또는 단체행사에 한함 · 필수내용: 행사일정, 계약기간, 단체명, 행사명(계약명), 인원, 계약금액 등

○ 지원절차



*계약서, 협약서, 양해각서, 의향서 등 실적 증빙자료 미비 시 지원불가

*방문하는 현지업체 개수는 세일즈 기간을 초과해야 함(인·아웃일자 제외 / 최소 2개소 이상 방문 必)

○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사전접수 (출장 진행 최소 7일 전)	사전신청서	서식 1-1
	계획서	서식 1-2
	현지 거래처 정보 및 사전 업무 협의 내용	홍보물, 홈페이지, 이메일 협의내용, 담당자 연락처 등
	사업자등록증	
	관광사업자등록증	
	영업보증보험증서	
결과보고 (출장 종료 후 7일 이내)	결과보고서	서식 2-1
	해외 세일즈 방문 보고서	서식 2-2
	서약서	서식 2-3
	세일즈 성과물	송객계약서, 의향서, 협약서 등 *부재 시 지원불가
	법인통장사본	
	이티켓	사전신청서 기준 출·도착일 정보 동일해야 함
	탑승권	
	발권 영수증	
	예약확인서	신청업체 자체서식 불가
	숙박확인서	신청업체 자체서식 불가
	호텔 숙박 인보이스 영수증	해외 현장 결제 시 해외사용승인내역 첨부 必
	차량 견적서	
	임차계약서	
	영수증 또는 이체확인서	
증빙사진		

□ 지원신청

○ 접수방법: 이메일(h_y_choi@naver.com) *서류 일체 이메일로만 접수

○ 문의처: 해외마케팅부 최형원 담당 (T. 064-741-8712)

※ 지원 가능여부 사전확인 필수

□ 유의사항

- 12월 세일즈 신청 시 공고에 명시된 접수 및 결과보고 기한 내 서류 미통과 시 지원 불가하오니 모든 서류 완비하여 제출 필수
- 공고에 명시된 접수기한 내 이메일 제출 완료 필수
- ※ 이메일 미접수에 따른 사전신청서 제출 누락 발생 시 협회 책임 없음
 - 제출 서류상 기재 착오나 업체 담당자 연락 불가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해 협회는 책임지지 않음

□ 행정사항

○ 지원제외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유관단체 포함)가 주관하는 유사한 내용으로 행·재정적 지원을 받는 상품 제외 (이중 지원 금지)
- 제주특별자치도 및 도내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에 의하여 개최되는 행사나 투어에 의한 경우
-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경우
- 신청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는 경우 (향후 3년간 배제)

○ 기타사항

- 공고문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 신청자에게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불인정 및 소급 적용하지 않음
- 지원금액 등에 논란이 있을 경우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의 방침과 결정에 의함
-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할 경우 전액 환수 조치되며, 향후 유사 지원사업 지급대상에서도 배제함
- 세부일정, 지원금 등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사전신청 후 결과보고 미제출 또는 신청 포기 시 차년도 사업에서 배제될 수 있음
-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거나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 또는 기타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의 결정 및 해석에 따름

붙임 신청서식 각 1부. 끝.